■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09-031.
http://doi.org/10.17948/kcs.2025..107.009

『제왕운기』 속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 기록에 대한 새로운 해석*

최종석(崔鍾奭)**

목 차

1. 머리말
2.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 표현의 실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이유와 맥락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제왕운기』에만 등장하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한 이유와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표현은 이승휴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근거로 고려 군주가 대외적으로도 황제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어 온 데 비해, 정작 해당 표현의 실재 여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표현의 실재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런 후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한 이유와 맥락을 규명해 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한 현상을 고려에서의 황제국 체제 운영과 연결해 해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금이 대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하면서도

* 이 논문은 2024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대 국사학전공 부교수.

이례적으로 대외적으로 왕국을 자처한 고려와 대등한 관계인 형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법적 대칭을 맞추기 위해 고려 군주를 '皇帝'로 칭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금 측이 일방적으로 금 황제를 형으로, 고려 군주를 아우로 상정한 채 서한식 외교문서를 보내면서, 형인 금국 황제와 격을 맞추기 위해 동생인 고려의 군주도 황제로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해 본 것이다.

주제어: 이승휴, 고려, 금, 형제 관계, 高麗國皇帝

1. 머리말

『帝王韻紀』에는 金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하며 국서를 보냈다는 기록, 즉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등장한다.[1] 이 표현은 고려 군주가 대외적으로도 황제 칭호를 인정받았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어,[2] 학계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3]

구체적으로 이 기록은 『제왕운기』 卷上에서 금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 중 "結爲兄弟通信使"의 細註, 곧 "臣嘗爲式目執事, 閱都監文書, 偶得金國詔書二通. 其序皆云,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 此結兄弟之訂也."라는 부분에서 보인다.[4] 이승휴는 금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금과 고려가 형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세주를 부기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금이 보낸 조서[5] 두 통의 서두에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

1) 『帝王韻紀』 卷上.

2) 일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휴의 위 자료는 외국에서도 고려 황제의 존재를 인정했음을 보여줌으로써 황제 칭호가 고려인들만의 自尊稱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익주, 「10-14세기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26면.

3) 이에 관한 주요 참고 논저는 다음과 같다.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노명호,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2012; 노명호,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03;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한국고대사연구』 55, 한국고대사학회, 2009; 장동익, 「『高麗史』가 Asia史의 硏究에서 차지하는 位相」, 『석당논총』 88,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4; 이익주, 「10-14세기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4) 『帝王韻紀』 卷上.

5) 후술하듯 이 문서는 조서가 아니라 서한식 문서였을 것이다.

고 한다.

그런데 이승휴의 이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가 언급한 두 통의 금 조서는 현존하지 않으며,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다른 기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이승휴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부정확한 기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승휴가 보았다고 한 문서의 내용을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그의 기억의 사실 여부뿐 아니라,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정확한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6]

요컨대, 이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었다 해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인한 일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 있는 것이다.[7] 이러한 배경과 이유에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 표현의 실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본 연구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금의 황제가 어떠한 이유와 맥락에서 고려의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기록을 언급하였을 때 거의 예외 없

6) 어느 부분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7) 이승휴의 세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금 측이 고려 군주를 황제로 칭한 이유를 탐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이승휴가 실제와 달리 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을 기술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그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되어 온 터라, 새로울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할 뿐 아니라,[8] 금 측이 고려 군주를 '고려국황제'로 부른 이유를 새로운 관점에서 규명해 볼 것이다.

우선, 이승휴가 작성한 세주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는 이승휴의 기억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으며, 그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목적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9]

세주에 따르면, 이승휴는 式目執事로 재직하던 시기에 식목도감의 문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두 통의 금 조서를 보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式目執事에 대응할 수 있는 式目錄事의 직을 역임한 바 있다.[10] 세주에서 언급된 式目執事는 정식 관직명이라기보다 식목도감 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보인다. 당시 식목도감의 관직에는 使, 副使, 判官, 錄事 등이 있었는데,[11] 이 가운데 錄事, 즉 式目錄事가 실무 담당직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승휴가 언급한 式目執事는 式目錄事를 지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式目執事 재직은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긴 해도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이다.

또한, 이승휴의 말마따나 식목도감에서는 문서를 열람하는 상황이 가능하였다. 이는 식목도감에 判案이라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던 데서[12] 뒷받침된다. 물론, 식목도감에 判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은 이곳에 금이 보낸 문서들이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식목도감

8) 필자가 아는 한, 기존 연구에서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증한 적이 없다.
9) 미리 고백하건대,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재하였을 가정 속에 이를 입증하고자 한 작업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10) 『動安居士集』 動安居士行錄卷第四 賓王錄 序.
11) 『고려사』 권77 지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式目都監. "文宗定, 使二人省宰, 副使四人, 正三品以上, 判官六人, 五品以上, 錄事八人, 甲科權務."
12) 『고려사』 권100 열전13 제신 두경승.

에 判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판안 보관 상태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것일 뿐,[13] 식목도감에 보관된 문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식목도감에는 判案 외에 다른 종류의 문서도 함께 보관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들 사실을 종합해서 보면, 이승휴가 式目執事로서 식목도감에서 금이 보낸 조서 두 통을 열람했다는 주장에는,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사실이 있었을 순 있어도, 작정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한 모습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서의 서두에 기록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은 이승휴가 실제로 실물을 보고 기억해 낸 것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그 표현이 『고려사』에 수록된, 금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고자 하며 보낸 국서의 서두, 즉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14]과 매우 유사한 데서 더욱 그러하다. 『고려사』의 이 기록은 원래 『예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휴가 『예종실록』에 기록되었을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을 보고서[15] 이를 임의로 변용해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을 지어냈을 가능성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세주에 기록된 해당 표현은 이승휴의 말마따나 그가 실제로 본 문서를 토대로 기억해 낸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16]

또한 『제왕운기』가 편찬된 시점인 충렬왕 13년(1287년)은[17] 고려가 원에 복속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때며, 제후국으로서의 위상이 국내에서조차 구현되는 것이 부정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18] 이승휴가 아무런 실체적 근거 없이 고려 군주의 위상을 국왕이 아닌 황제로 격상해 기록할 동기는 없

13) 『고려사』 권100 열전13 제신 두경승.
14) 『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 계축.
15) 후술하겠지만, 『예종실록』에는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皇帝'라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6) 이승휴 기록과 『고려사』 기록 사이의 유사성은 추정컨대 공통의 문서를 활용한 데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17) 『帝王韻紀』 帝王韻紀進呈引表.
18)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참조.

었을 것이다. 실제로 『제왕운기』 가운데 자국사를 다루는 卷下에서 고려를 포함한 각국의 군주를 황제(천자)로 칭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이승휴가 고려 군주의 칭호를 인위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세주 작성의 직접적인 목적을 살펴보더라도, 이승휴가 고려 군주를 사실과 다르게 황제로 칭하였을 가능성은 작다. 그는 금과 고려가 형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본 문서의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였다. 형제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가 굳이 고려 군주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높여 적을 필요도 동기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세주에 기록된 해당 표현이 실제 본 문서를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종합해 보면, 이승휴가 『제왕운기』에서 고려와 금의 형제 관계를 서술하면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구절을 허위로 만들어낼 동기나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실제로 본 문서를 토대로 기억해 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19]

다만, 이 기록은 철저히 기억에 기대고 있었기에 부분적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가령 이승휴는 자신이 본 문서를 金國詔書라고 했으나 서두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실상은 금 측이 고려에 보내온 서한식 문서였을 것이다. 또한 '云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문구는 두 통의 문서 서두를 종합해 재구성한 결과물이었을 것이다.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은 각각의 문구와 달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이승휴의 세주 기록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했다는 점이 『고려사』 기록과 충돌한다

19) 한편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은 위와 같은 표현에서 '高麗國皇帝'가 실재하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좁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려사』에 수록된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라는 기록으로 보아,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와 같은 형식의 표현은 사용되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그와 같은 형식의 기록에서 '高麗國皇帝'가 서술되었는지 여부일 것이다.

는 사실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금이 고려에 형제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며 보낸 국서의 서두는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이었다.[20] 즉, 『고려사』에 의거하면 이때 금은 고려 군주를 '高麗國王'이라 불렀지, '高麗國皇帝'라 칭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고려사』에 기록된, 이때 이후에 금 측이 작성해서 보낸 서한식 문서에서도 고려 군주의 칭호는 '高麗國王'으로 일관되게 기술되었다.[21] 이들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승휴 세주에 등장하는 '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휴가 보았다고 주장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이 실재한다고 했을 때, 『고려사』 기록과의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高麗國皇帝'가 '高麗國王'으로 개서되었다고 하면, 의문은 해소될 수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高麗國皇帝'가 '高麗國王' 식으로 개칭되었다고 하면, 그 시점은 『예종실록』을 편찬하였을 때가 아니라, 조선 초기에 『고려사』가 편찬된 때였을 것이다.[22]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하였을 때에 기본적으로 직서 원칙이 적용되었지만,[23]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이긴 하나 제후국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을 수정한 改書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 때문이다.[24] 금이 보낸 문서 가운데 '高麗國皇帝'로 기재되었을 대목을 '高麗國王'으로 바꾼 것도 그러한 드문 사례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승휴의 세주 기록이 기본적으로 사실이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고려사』 기록이 이승휴의 세주 기록과 충돌하는 현상은 조선 초기에

---

20) 『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 계축.
21) 『고려사』 권14 예종 14년 2월. "金主遣使來聘, 致書曰, 詔諭高麗國王. 朕興師伐遼, 賴皇天助順, 屢敗敵兵, 北自上京, 南至于海, 部族人民, 悉皆撫定. 今遣孛堇朮孛報諭, 仍賜馬一匹, 至可領也."
22)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한국고대사연구』 55, 한국고대사학회, 2009, 266면; 이익주, 「10-14세기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26면 참조.
23) 『고려사』 纂修高麗史凡例.
24) 노명호, 「《고려사》의 '僭擬之事'와 '大赦天下'의 '以實直書'—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서울대 국사학과, 2014.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서 작업의 결과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이유와 맥락

1) 기존의 이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본 장에서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금 황제가 고려의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이유와 맥락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금 측이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하였을 사실을 두고서 여러 해석이 제기될 수 있지만,[25] 기존 연구들은 소소한 차이가 있긴 해도 대체로 고려가 황제국(천자국) 체제를 운영했기에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했을 것이라 해석해 왔다. 즉, 고려는 국내에서 황제국 체제를 유지했고, 이와 맞물려 영역 주변의 여진 등을 藩屛으로 삼아 온 여건 속에서, 여진 세력은 고려 군주를 황제(천자)로 칭해 왔고, 그 여파로 금이 건국되고 稱帝建元을 했음에도 일정 기간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皇帝'로 칭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비록 제한적 범위인 藩屛에서라 할지라도 고려의 황제 위호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기에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 같은 표현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26]

이처럼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한 현상은,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운영한 결과로 나타난 遺制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운영했다고 보는 해석은 논리와 논거 면에서 취약한 사실을 감안할 때,[27] 이 현상을 천편일률적으로 고려의 황제국 운영과 직접 연결해서 설

25) 원론적으로는 관련 자료가 없어 명확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기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6) 각주 3번에서 소개한 논저 참조.
27)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최종석,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진단학회, 2015;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명하는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연구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즉, 기존의 해석 틀을 벗어나, '金 황제가 왜, 어떤 배경 속에서 고려 군주에게 '高麗國皇帝'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기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려가 국내에서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일관되게 '外王內帝' 체제를 유지했던 사례와 비교하면, 고려가 국내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이전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베트남에서 운영된 황제국 체제는 중국에서 구현된 것과 차이가 나질 않을 정도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래서인지 베트남의 국제가 황제국제라는 사실을 두고 학계 내에서 이견 제시를 비롯한 논란이 없으며, 황제국 체제를 입증하는 연구도 사실상 없다. 황제국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전기 국제가 황제국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으며 각종 황제 제도를 발굴·열거하여 고려가 황제국 체제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28]

고려전기의 국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 제도를 위주로 운영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대인의 시각에서 비롯된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고려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황제 제도를 위주로 국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했기에 대부분의 제도를 두고서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이항대립 속에서 의도적이고 일관되게 황제 제도를 선택해 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일부 제도의 경우, 당시에도 그것들은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이항

250, 역사학회, 2021a; 최종석,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1b; 최종석, 「고려전기 다중심적 국제질서는 '황제국 체제'의 성립·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화』 10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28) 같은 글, 2024, 159-160면.

대립 가운데 황제 제도에 해당한다고 인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들조차도 당시의 지적 환경 속에서는 황제 제도로 뚜렷하게 의식되지 않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되거나 회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제도들은—후대에는 황제 제도로 간주되는 것—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의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애초에 그런 이항대립의 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황제 제도로 인지되지 못하거나 그 여부가 모호했을 것이다. 나아가 고려전기의 국제 운영은 황제 제도와 제후 제도가 혼용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심지어 황제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제후 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양상이 빈번히 나타났다.[29]

아울러 고려에는 황제국 체제를 구축하려는 명확한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베트남이 '南國 의식'과 같은 중국과의 대등의식을 바탕으로 황제국 체제를 온전히 구현한 것과 달리, 고려에서는 이와 같은 대등의식이 사실상 부재하였다. 대등의식이 아니더라도 황제국 체제를 지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모종의 목적의식도 미미하거나 부재하였다. 이러한 지적 환경 속에서 고려의 국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구성되기보다는, 혼종적이고 불규칙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30]

둘째, 보다 직접적인 이유이자 첫 번째 이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고려가 국내에서조차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황제국 체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체제를 운영하려는 목적의식 또한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보면, 특히 여진을 비롯한 주변의 번병 세력이 고려 군주를 일관되게 황제(천자)로 인식하고 칭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여진이 고려 군주를 일관되게 황제로 인식하고 칭했다'라는 논지는 실증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논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극히 일부의 단편적 사례에 근거해 그러했을 것이라는 가정만이 제기되어 왔을 뿐이다.

고려는 황제국인 중국에서 시행하던 방식·제도를 차용·활용하여, 영토 밖

29) 최종석, 앞의 글, 2015; 최종석, 앞의 글, 2021a.
30) 같은 글, 2021a; 최종석, 앞의 글, 2021b; 최종석, 앞의 글, 2024 참조.

여진 세력에게 무산계와 향직 등을 하사함으로써 일종의 군신 관계를 맺고 이들을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31] 이러한 맥락에서 황제(천자)가 번병을 운영하는 듯한 양상과 관련 담론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려가 황제국 체제 운영을 염두에 두고 번병을 조직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였다거나, 번병을 상대로 칭제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베트남처럼 뚜렷한 대외 인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황제(천자) 체제를 내세우며 주변 지역을 번병으로 간주했다면, 고려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번병 운영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이에 관한 기록도 적지 않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번병 측에서 고려 군주를 황제로 칭하기도 한 사례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서 그러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진 쪽을 보더라도, 금을 건국하고 칭제건원을 한 이후까지도 고려 군주를 관성적으로 황제로 칭할 만큼, 고려 군주를 일관되게 황제(천자)로 인식하고 불렀던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32] 고려의 번병이라는 의식을 간헐적으로 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사례를 고려 국내의 황제국 체제 운영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기존의 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오히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황제국 금의 왕국 고려에 대한 형제 관계 설정과 '高麗國皇帝'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와 같은 표현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가정할

31)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참조.
32) 명확한 한 건의 사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때, 금(황제)이 어떤 이유와 맥락에서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기존 해석과는 다른 시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러한 표현이 특정한 시기에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이 고려를 형제국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국서를 보내던 시기에만[33]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와 같은 표현이 쓰였을 것이다. 해당 표현은 황제가 황제를 상대로 서한을 보내는 형식이므로,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34] 자연히 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 고려가 이를 수용한 이후에는 양국 간에 이러한 표현은 더는 사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승휴가 금이 보낸 국서 서두에 기록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을 근거로 금과 고려가 형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석한 점은, 이 표현이 금이 고려를 형제국으로 삼고자 했던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금이 고려와의 형제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서를 보냈을 당시, 국서에서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것이 어디까지나 금의 일방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금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자고 요청했던 다음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金主 阿骨打가 阿只 등 5인을 보내 서한을 보내 이르기를, "형인 大女眞金國 황제는 아우인 고려국왕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우리는 祖考 때부터 한쪽 지방에 끼어 있으면서 거란을 大國이라고 하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무도하여 우리 강역을 유린하고 나의 인민을 노예로 삼았으며, 아무 명분 없이 누차 군사를 일으켜왔습니다. 나는 부득이하게 이에 항거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을 얻어 그들을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건대, 왕은 우리와의 화친을 허락하고 형제의 관계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 관계를 이루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좋은 말 1필도 보냈다.[35]

---

33) 후술하듯 금과 고려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형제 관계가 체결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 듯하다.
34) 이러한 서한식 외교 문서에 관해서는 정동훈,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2022 참조.
35) 『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 계축. "金主阿骨打遣阿只等五人, 寄書曰, 兄大女眞金國皇帝, 致書于

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예종 12년(1117) 3월, 금 사신 阿只 등 5인은 금의 군주가 고려의 군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고려 측에 전달하였다. 이 서한식 문서의 핵심 내용은 금이 거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였음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들의 변화된 위상을 고려하여 과거에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던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문서의 서두에는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고려 측의 동의와 무관하게 금의 군주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형, 고려 군주를 아우(弟)로 설정한 표현이며, 동시에 금의 군주가 고려를 상대로 스스로 황제임을 표방한 것이었다.

금이 고려와의 형제 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이것의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고려는 무대응으로 반응하였다. 당시 고려 조정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신들조차 금의 제안을 강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 사이에서는 금 사신의 목을 베자는 강경한 의견이 지배적일 정도였다.[3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려는 금 사신을 처형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지는 않았어도, 형제 관계를 수용한다거나 거부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곧 금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형제 관계 설정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이후에도 상황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고려 측의 반응이 없음에도, 금은 예종 14년(1119) 2월에 거란에 대한 군사 행동의 성공 및 영토의 확장을 알리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37] 이에 답하여 고려는 비로소 금 측에 사신을 보냈기는 하나, 금 측이 제안한 형제 관계의 수용을 전제로 2월에 온 문서에 화답하고자 사신을 보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고려 사신이 지니고 간 국서에는 '하물며 저 근원이 우리 땅에서 시작되었다(況彼源發乎吾土)'라는 금

弟高麗國王. 自我祖考, 介在一方, 謂契丹爲大國, 高麗爲父母之邦, 小心事之. 契丹無道, 陵轢我疆域, 奴隷我人民, 屢加無名之師. 我不得已拒之, 蒙天之祐, 獲殄滅之, 惟王許我和親, 結爲兄弟, 以成世世無窮之好. 仍遺良馬一匹."

36) 『고려사』 권97 열전10 諸臣 김부일 附 김부의; 『고려사절요』 권8 예종 12년 3월.

37)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4년 2월. "金主遣使來聘, 致書曰, 詔諭高麗國王. 朕興師伐遼, 賴皇天助順, 屢敗敵兵, 北自上京, 南至于海, 部族人民, 悉皆撫定. 今遣孛董朮孛報諭, 仍賜馬一匹, 至可領也."

측을 도발하는 언사가 기재되어 문서 접수가 거부된 사실로[38] 볼 때 그러하다. 양국이 서로 형제 관계를 인정하면서 관계가 안정적이게 되는 상태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문서 접수 거부라는 일을 겪고 나서 양국 사이는 냉각되어 이후 한동안 사신 교류가 중단되었다.[39] 그러다 오랜만에 금에 간 고려 사신이 전달한 국서마저 표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서 접수가 거부되었다.[40] 금은 이제 고려를 상대로 稱臣(군신 관계)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처럼 금이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요구한 이후 양국 사이에 전개된 양상을 보면, 금이 형제 관계를 상정하며 자국의 군주를 '大金國皇帝'로, 고려의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한 것은 고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이 자국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행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금의 일방통행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기에, 형제 관계를 수용한 채, 달리 말해, 아우의 위상을 받아들인 채, 금과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필자는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하며 국서를 보낸 현상은, 고려의 황제국 체제 운영이라는 고려 내부 요인이 아니라, 금이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맺고자 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금은 이미 대외적으로 황제(국)를 표방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맺고자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외교 행보였고, 그 결과로 금 황제가 고려 군주에게도 '高麗國皇帝'라는 대

---

38)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4년 8월 丁丑. "遣中書主事曺舜擧, 聘于金, 其書有況彼源發乎吾土之語, 金主拒不受."

39) 이 기간 중인 1120년(天輔 4년)에 금의 사신 高隨와 斜野가 고려 국경에서 되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 측의 接待 예절이 불손하다는 이유에서였다.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 "高隨斜野奉使高麗, 至境上, 接待之禮不遜, 隨等不敢往. 太宗曰, 高麗世臣於遼, 當以事遼之禮事我, 而我國有新喪, 遼主未獲, 勿遽强之. 命高隨等還."

40) 『고려사』 권15 인종 3년 5월 임신. "遣司宰少卿陳淑, 尙衣奉御崔學鸞如金, 金以國書非表又不稱臣不納." 금 측의 칭신 요구에 대응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관해서는 인종 4년 3월 신묘일의 백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고려사』 권15 인종 4년 3월 신묘 참조.

등한 호칭을 부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만약 금이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았다면,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표현 자체는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41] 금이 고려에 일방적으로 제안한 형제 관계가 이 표현이 등장할 수 있었던 '필수 조건'으로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금이 고려와 맺고자 한 형제 관계는 왜 이례적이었을까? 핵심 이유는 금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황제국으로 표방하면서도, 정작 황제국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설정하려 한 것이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금은 스스로 황제국임을 선언해 놓고도, 과거부터 중국의 각종 황제국과 군신 관계를 맺어 온 왕국 고려를 상대로 형제국 대우를 제안한 것인데, 이는 전근대 외교의 일반적 관례에서 벗어난 매우 파격적 행보였다.

보통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황제국이 왕국과 敵禮 관계인 형제 관계를 맺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황제국(천자국)의 입장에서는 왕국을 상대로 君臣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으며, 형제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유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제국 금이 왕국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외교적 제스처였던 것이다. 실제로, 대외적으로 왕국(제후국)을 표방한 한반도 왕조들이[42] 대외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한 국가와 형제 관계를 맺거나 시도한 사례는, 금과의 관계가 유일하다.[43] 참고로 후대의 일이긴 해도, 조선이 정묘호란 이후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을 당시, 이것은 조선국왕과 金國汗 간의 형제 관계였다.[44]

---

41) 이러한 접근은 과거의 유제로 인해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했다고 본 종래의 이해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겠다.

42) 주지하듯 한국 역사상 대외적으로 황제를 표방한 것은 대한제국에 와서였다. 참고로 대한제국의 칭제건원은 만국공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근대적 현상이었다.

43) 일본의 경우 대외적으로 칭제를 하였고 조선은 일본과 적례 관계라 할 수 있는 교린 관계를 맺었지만, 조선의 국왕은 일본 천황이 아니라 日本國王(日本國大君)이라 칭해지는 쇼군과 관계를 맺었다.

44) 가령 '金國汗致書于朝鮮國王'(『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4월 병신) 식으로 金國汗과 朝鮮國王 사이에 서한식 문서가 오고 갔다.

이후 후금이 稱帝建元하여 황제국인 大淸으로 바뀌자, 조선에 즉시 稱臣을 요구한 것은,[45] '황제 대 국왕' 구도가 형제 관계와 양립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앞서 확인했듯이, 황제국인 금이 왕국인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자고 한 것은 고려와의 사전 조율을 거친 결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결정이었다. 이는 금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고려에 '형제 관계'라는 이례적인 요구를 통보했음을 의미한다. 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기에 앞서, 일시적이나마 형제 관계를 맺고자 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중 유력하였을 이유로는, 위 기사에서 보았듯이, 여진이 오랫동안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다는 역사적 무게감이 꼽힌다.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구하기 몇 해 전만 해도, 여진은 부모의 나라로 섬겨 온 고려에 9성 반환을 요청하며 "자손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한 바 있다.[46]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여진은 급성장하여 거란을 제압하고, 군사적으로 고려의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진은 오랫동안 고려를 상국이자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던 역사적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듯하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금은 칭제건원을 했음에도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금이 급성장한 사실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다소 성급하게 칭제건원을 한 점 또한 칭제를 했음에도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요청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1117년에 금의 군주 아골타가 황제위에 오르고서 요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의논하고 책봉을 요구한 사실이다.[47]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황제를 칭했으면서도 '대국의 책봉'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모순된 행위였다.[48] 이

45) 이장희, 「병자호란」, 『한국사』 29권(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273-274면과 292-293면 참조.
46) 『고려사』 권13 예종 4년 6월 경자. 고려는 이를 명분 삼아 여진 측에 9성을 반환하였다. 『고려사』 권13 예종 4년 7월 병오와 신유 참조.
47) 『遼史』 卷28 天祚皇帝 天慶 7년. "是歲, 女直阿骨打用鐵州楊朴策, 即皇帝位, 建元天輔, 國號金. 楊朴又言, 自古英雄開國或受禪, 必先求大國封冊, 遂遣使議和, 以求封冊."
48) 정동훈,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2022, 242-243면.

는 금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여 황제국을 칭하기는 했어도, 아직 황제국 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고려를 상대로 형제 관계를 제안한 것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에서 금은 군사력과 국력 면에서 이미 고려보다 우위에 있었고 대외적으로 稱帝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신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군사력과 국력 면에서 고려보다 우위에 있었던 만큼, 과거에 부모의 나라였던 고려를 이제는 아우(弟)로 간주하기는 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황제국임을 표방한 금이 왕국인 고려와 대등한 관계, 즉 형제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이례적인 상황에서, 금 황제는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금이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국서 서두에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이라고 썼다는 『고려사』 기록을[49]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요청 형태이지만, 사실상 고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 황제를 형, 고려 군주를 아우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군신 관계에서 사용되는 詔書가 아니라 서한식 문서를 보내며('致書')[50] 형제 관계를 요청하였다.

만약 이승휴가 보았다고 한 두 통의 조서의 서두에 기록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 사실이라면, 금은 형제 관계를 요청하는 서한식 문서를 보내면서 그 관계에 걸맞게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즉, 적례 관계로서의 형제 관계를 표방하기 위해, 금 황제를 형으로, 고려 군주를 아우로 부르면서, 예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려 군주의 칭호 또한 '高麗國皇帝'로 설정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황제대 황제'라는 외교 격식을 만들어 형제 관계라는 적례를 구현하려 한 시도였을 것이다.

---

49) 『고려사절요』 권8 예종 12년 3월.
50) 『제왕운기』에는 '寄書'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승휴가 보았다고 한 두 통의 국서 중 첫 번째 문서는 예종 12년(1117) 3월 금에서 보내온 서한식 문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골타는 1115년 금을 건국하고 칭제건원을 한 뒤, 예종 12년(1117) 3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냈는데,[51] 바로 이때 금은 형제 관계를 요구하는 서한식 문서를 전달했다.[52] 이 문서의 서두에는 '兄大女眞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皇帝'와 같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이승휴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기억을 남겼을 개연성이 높다.

이 이전에 온 금 사신 阿只는 국서를 지니고 왔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53] 설령 국서를 지니고 왔더라도, 예종 12년 3월에 전달된 국서에서 처음으로 형제 관계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 국서에서는 형제 관계를 요청하거나 고려의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칭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종 12년 3월 금 황제 명의로 보내온 서한식 문서에서 형제 관계를 요청하며 금 황제를 형으로, 고려 군주를 아우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승휴가 보았다고 한 두 통의 국서 중 첫 번째 문서는, 예종 12년(1117) 3월 금에서 보내온 서한식 문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금이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또 다른 한 통의 국서는 예종 14년(1119) 2월에 도착한 서한식 문서였을 가능성이 크다.[54] '來聘'과 특히 '致書'라는 용어를 고려할 때, 이 문서 역시 서한식 문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 국서는 '詔諭'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외에 금의 군주가 자신을 '짐'이라 칭하고, 고려 군주에게 말을 선물하는 행위를 '賜'라는 동사로 표현

51) 이때 앞서 인종 11년 4월에 금 군주 阿骨打가 보낸 阿只가 고려에 온 바 있다.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1년 4월. "金主阿骨打, 遣阿只來."

52) 『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 계축. "金主阿骨打遣阿只等五人, 寄書曰, 兄大女眞金國皇帝, 致書于弟高麗國王. 自我祖考, 介在一方, 謂契丹爲大國, 高麗爲父母之邦, 小心事之. 契丹無道, 陵轢我疆域, 奴隸我人民, 屢加無名之師. 我不得已拒之, 蒙天之祐, 獲殄滅之, 惟王許我和親, 結爲兄弟, 以成世世無窮之好. 仍遺良馬一匹."

53)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1년 4월. "金主阿骨打, 遣阿只來.".

54) 『고려사』 권14 예종 14년 2월. "金主遣使來聘, 致書曰, 詔諭高麗國王. 朕興師伐遼, 賴皇天助順, 屢敗敵兵, 北自上京, 南至于海, 部族人民, 悉皆撫定. 今遣孛堇朮孛報諭, 仍賜馬一匹, 至可領也." 이와 부합하는 『金史』 기록은 다음과 같다. 『金史』 卷2 本紀2 太祖 天輔 2年 12月 甲辰. "遣孛堇朮孛, 以定遼地, 諭高麗."

한 점에서,[55] 이전 국서와 달리 상하 관계를 강하게 풍기긴 해도,[56] 여전히 형제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국서의 서두에서도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 뒤 예종 14년 12월경에 도착한 국서는 詔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7] 보내온 국서가 조서인 데서, 이 문서의 서두는 더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와 같은 형식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금이 형제 관계를 전제로 한 외교적 서신 교환을 중단하고, 군신 관계를 암묵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금이 아직 고려에 대해 형제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노골적으로 군신 관계를 강요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서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금이 고려를 형제국이 아닌 신하국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태도를 변화해 나갔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금의 입장은 인종 3년(1125) 5월, 고려가 보낸 국서에 대해 '表文이 아니며, 고려 군주가 신하를 칭하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으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58]

이렇다고 하면 이승휴가 보았다고 한, 서두에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 기록된 두 통의 조서는, 금이 형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한식 문서로 보낸 것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각각 예종 12년 3월과 예종 14년 2월, 고려가 금으로부터 받은 이 두 통의 국서에 한정해서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云云'과 같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 두 통의 국서가 완전히 동일한 서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승휴는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두 문서의 서두를 조합하여 '大金國皇帝寄

55) 다음 기록에서 보듯, 『고려사절요』에는 '詔諭'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사절요』 권8 예종 14년 2월. "金主遣使來聘, 致書曰, 朕興師伐遼, 賴皇天助順, 屢敗敵兵, 北自上京, 南至于海, 部族人民悉皆撫定. 今遣孛堇, 朮孛報諭, 仍賜馬一匹, 至可領也."

56) 정동훈,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2022, 244면.

57) 『고려사』 권14 예종 14년 12월. "是歲, 增築長城三尺. 金邊吏發兵止之, 不從, 報曰, 修補舊城. 葛懶甸孛堇胡剌古習顯以聞, 金主詔曰, 毋得侵軼生事, 但愼固營壘, 廣布耳目而已."

58) 『고려사』 권15 인종 3년 5월 임신. "遣司宰少卿陳淑, 尙衣奉御崔學鸞如金, 金以國書非表又不稱臣不納."

書于高麗國皇帝云云’이라는 표현을 생성해 냈을 것이다.

요컨대, 금은 대외적으로 황제를 표방한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고려와 형제 관계를 맺고자 했다. 금은 이러한 관계를 상정한 채 두 차례 정도 고려를 상대로 외교문서를 보냈다. 형제 관계를 상정한 채 국서를 보내는 것은 고려와의 사전 합의가 아닌, 금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였다. 이때 금은 국서를 보내면서 형인 금국 황제와 격을 맞추기 위해 동생인 고려의 군주도 황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칭호 사용 역시 고려 측이 동의했거나 요청해서가 아니라, 금이 자신들의 외교 논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금은 일방적으로 형제 관계라는 敵禮 관계를 상정하여 고려와 황제 대 황제의 대등한 관계를 상정하였고, 그 결과 금이 보낸 서한식 문서에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식의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제왕운기』에만 등장하는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라는 독특한 표현에 주목하여 우선 그 실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러한 표현이 실제로 쓰였다고 했을 때, 금 측이 어떠한 이유와 맥락 속에서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로 불렀는지를 규명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현상을 고려 국내에서의 황제국 체제 운영과 직접 연결하여 해석해 왔다. 하지만 고려 국내에서 황제국 체제가 운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논리와 논거 면에서 취약한 데서, 본 연구는 이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론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금 황제가 고려 군주를 ‘高麗國皇帝’라 칭한 현상의 원인을 고려의 황제국 체제 운영이라는 고려 내부 요인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황제국임을 표방한 금이 이례적이게도 대외적으로 왕국을 표방하고 있는 고려와 대등한 관계인 형제 관계를 맺고자 했던 금의 외교적 행보에서 찾고자 했다.

금 측은 일방적으로 금 황제를 형, 고려 군주를 아우로 부르는 형제 관계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敵禮 관계 속에서 예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 황제의 칭호와 호응하도록 고려 군주에게도 '皇帝' 칭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안해 본 것이다.

비록 시론적 작업이긴 해도,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하고, 향후 '大金國皇帝寄書于高麗國皇帝' 표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촉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창현, 「신라왕실과 고려왕실의 칭호」, 『한국고대사연구』 55, 한국고대사학회, 2009.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노명호,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03.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노명호,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2012.
노명호, 「《고려사》의 '僭擬之事'와 '大赦天下'의 '以實直書'—핵심이 삭제된 고려의 황제제도」, 『한국사론』 60, 서울대 국사학과, 2014.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이익주, 「10-14세기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역사상의 탐색』, 집문당, 2017.
이장희, 「병자호란」, 『한국사』 29권(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장동익, 「『高麗史』가 Asia史의 硏究에서 차지하는 位相」, 『석당논총』 88,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4.
정동훈,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 혜안, 2022.
최종석, 「베트남 外王內帝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본 고려전기 이중 체제의 양상」, 『진단학보』 125, 진단학회, 2015.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최종석, 「왜 고려전기의 國制는 황제국 체제로 보일까?—후대 감각과 지식의 소급 적용으로 탄생한 고려전기 황제국 체제」, 『역사학보』 250, 역사학회, 2021a.
최종석, 「고려적 國制 운용의 인식적 맥락들」, 『민족문화연구』 9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1b.
최종석, 「고려전기 다중심적 국제질서는 '황제국 체제'의 성립·운용과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베트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문화』 10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4.

【Abstrac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ecord in Jewang Ungi (帝王韻紀) That the Jin Dynasty Referred to the Ruler of Koryŏ as the 'Emperor of Koryŏ'

Ch'oe, Chong-sŏk*

This study examines the plausibility that the expression in which the Jin dynasty referred to the ruler of Koryŏ as the 'Emperor of Koryŏ(高麗國皇帝)', found only in Jewang Ungi(帝王韻紀), was actually used, and seeks to clarify the reason and context behind such usage. Although this expression is based solely on the recollection of Yi Seung-hyu, it has long been cited as evidence that the Koryŏ ruler was recognized as an emperor even in foreign relations. However,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phrase's historical authenticity has been lacking.

Rather than reaffirming or dismissing previous claims, this study undertakes a multifaceted investigation into the expression's plausibility, drawing on a range of historical sources. Whereas earlier scholarship has typically interpreted the Jin emperor's designation of the Koryŏ ruler as an 'emperor' in relation to Koryŏ's supposed operation of an imperial system, this paper explores an alternative possibility. It proposes that the Jin dynasty—despite styling itself as an imperial power—exceptionally sought to establish a ritualized fraternal relationship with Koryŏ, which externally maintained a royal identity. In doing so, the Jin may have used the title 'Emperor of Koryŏ' to preserve ritual symmetry in diplomatic exchanges. The Jin court, having unilaterally designated its own emperor as the elder brother and the Koryŏ monarch as the younger, may have elevated the latter's title within diplomatic correspondence to uphold the decorum of epistolary diplomacy.

Keywords: Yi Seung-hyu, Koryŏ, Jin Dynasty, fraternal relationship, Emperor of Koryŏ

접수일: 2025.03.31.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14.

* Associate Professor, Major in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